
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항만시설의 유지·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‘항로·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’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9조제4항 단서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9조제4항 단서는 항만시설의 유지·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‘항로·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’이 포함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항로·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여부 통지기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고,

안 부칙 제2조는 항만개발사업 허가 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항로·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허가 여부가 통지되지 않은 자에게도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.

- 그런데 안 부칙 제2조는 ‘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유지·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’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시행 전에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 여부가 통지되지 않은 자가

개정안에 따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임.

- 또한 현행법 제9조제5항은 관리청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통지기간이나 연장 또는 재연장된 처리기간이 끝난 다음 날 항만개발사업이 허가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,¹⁾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안 부칙 제2조의 적용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부칙 제2조의 적용례가 이 법 시행 전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여부가 통지되지 않은 자를 포함함을 명확히 하는 수정 의견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마련함.

<부칙 제2조에 대한 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건
부 칙	부 칙
제2조(항만개발사업 허가 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·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<u>신청한 경우에는</u>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.	제2조(항만개발사업 허가 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·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<u>신청하고 통지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</u>

1) 「항만법」 제9조(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)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항만시설의 유지·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.
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.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	말한다)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(전문위원 박 병 섭)